

구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03. 4.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감발급 민원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부주의, 실수가 민원사고로 이어져 재정손실은 물론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어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인감사고로부터 위험부담을 덜어주고자 “구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인감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정함.
- 보험의 가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되 보험가입금액은 1인당 최저 300,000천원이상 가입토록 규정함.
- 보험료의 지급은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토록 규정함.
- 인감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관계보험회사에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되, 변상책임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 관리토록함.

3. 참고사항

○경상북도 총무12130-10230(2003. 01. 29)호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준칙”(안)시달

구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300,000천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